

## 2026학년도 제1차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

1. 일시: 2026년 3월 12일(목) 14:00 ~ 14:30
2. 장소: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809호 회의실
3. 참석위원: 총무처장 명선영(위원장), 안전팀장 이종철, 안전팀 김민식  
창조중부보건안전 엄현경, 건축시설팀 반장 황지제  
SK윌더스 팀장 문재구, 아이비푸드 영양사 이윤미  
삼구아이앤씨 소장 주광호

### 4. 안 건

- 제1호 의안: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(법 제16조)  
제2호 의안: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자체 시행(법 제29조)  
제3호 의안: 2025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(시행규칙 제210조)

### 5. 회의 내용

#### 가. 개회

위원장은 2026학년도 제1차 안전보건위원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#### 나. 안건심의

- 1) 제1호 의안: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(법 제16조)
  - 위원장: 제1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  - 위원장: 제1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2) 제2호 의안: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자체 시행(법 제29조)
  - 위원장: 제2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  - 위원장: 제2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3) 제3호 의안: 2025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(시행규칙 제210조)
  - 위원장: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, 안전관리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  - 위원장: 제3호 안건심의를 종결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
#### ※ 기타 논의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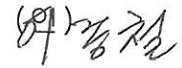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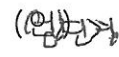




- 문재구 위원: 행정관 및 프라임관 인접 철계단 미끄럼방지 조치 요함  
→ 위원장: 즉시 조치하겠음
- 황지제 위원: 미대 폐수 운반 대책 수립 요함  
→ 위원장: 관련부서와 검토하여 대책 수립하겠음

다. 폐회선언

위원장은 더 이상의 안건 및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2026년 3월 12일

기록자: 이종철

위원장	명선영	
위원	이종철	
위원	김민식	
위원	엄현경	
위원	황지제	
위원	주광호	
위원	문재구	
위원	이윤미	

# [2026학년도 제1차 안전보건위원회]



2026. 3. 12.(목) / 14시 / 성신관 809호 소회의실



성신여자대학교

## 2026학년도 제1차 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

2026. 3. 12.

총무처 안전팀

# 2026학년도 제1차 성신여자대학교 안전보건위원회

## □ 개 요

- 일 시 : 2025. 3. 12.(목) 14:00
- 장 소 : 성신관 809호 소회의실
- 안전보건위원회 참석위원

연 번	구 분	위 원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1	위원장	당연직	총 무 처	처장	명선영	안전보건 관리책임자
2	사용자 위원	위촉직	안 전 팀	팀장	이종철	안전보건 총괄책임자
3		당연직	안 전 팀	담당	김민식	안전관리자
4		당연직	창조중부보건	담당	엄현경	보건관리자 (담당자 변경)
5		당연직	건축시설팀	반장	황지제	근로자 대표
6	근로자 위원	위촉직	삼구아이앤씨	소장	주광호	
7		위촉직	SK 윌더스	팀장	문재구	
8		위촉직	아이비푸드	영양사	이윤미	

## □ 상정안건 (3건)

NO.	안전보건위원회 안건	근 거 (산업안전보건법)
1	▶ <b>관리감독자 선임 변경</b>	▶ 제16조
2	▶ <b>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자체 시행</b>	▶ 제29조
3	▶ <b>2025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</b>	▶ 시행규칙 제210조

## 안건 1

### 관리감독자 선임 변경

#### 관계법령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조

#### 안건내용

- 영선업체 관리감독자 변경

구분	소속	직급	성명	임 면 사항		임면일
				면	임	
기존	에스텍 시스템	소장	김호순	성신여자대학교 관리감독자	-	2026.2.28
변경			오근택	-	성신여자대학교 관리감독자	2026.3.1

## 안건 2

###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 자체 시행

#### 관계법령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

#### 안건내용

-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(연간 16시간)에 대하여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(8시간)을 자체 시행으로 변경

○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25년도 시행 내역

구분	교육일정	교육시간
집체 교육	수정캠퍼스 관리감독자 3월, 5월, 9월, 11월 운정캠퍼스 관리감독자 4월, 6월, 10월, 12월 ※ 안전팀 교육 시행	2시간씩 4회 총 8시간
온라인 교육	11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(edukisa.or.kr) 8명 교육 시행 ※ 수정캠퍼스 미화업체, 영선업체 관리감독자 제외	8시간
기타	수정캠퍼스 미화업체, 영선업체 자체 시행	8시간

○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26년도 교육 계획

구분	교육일정	교육시간
집체 교육	수정캠퍼스 관리감독자 3월, 5월, 9월, 11월 운정캠퍼스 관리감독자 4월, 6월, 10월, 12월 ※ 안전팀 교육 시행	2시간씩 4회 총 8시간
온라인 교육	11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(edukisa.or.kr) 2명 교육 시행 ※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제외	8시간
기타	협력업체 자체 시행 후 결과 11월까지 제출	8시간

**□ 관계법령**
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210조

**□ 안건내용**

- 현업근로자(영선, 보안, 식당, 미화) 2025년도 건강진단 결과를 안전팀에서 취합 완료 ※ 1년 이상 근무자 대상
- 보건관리 위탁기관(창조중부보건안전)에서 2025년도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건강상담 시행하며 사전 건강검진 결과 사후관리 동의서 ‘동의’ 로 제출한 근로자만 시행
- 건강상담 일정: 홀수달 2째주 수요일(수정캠퍼스)  
짝수달 2째주 목요일(운정캠퍼스)  
※ 상담대상 및 세부일정은 안전팀에서 사전 통보
- 건강상담 결과: 병원 내방 등 필요한 조치를 근로자에게 안내  
업무 관련 질병이 심각한 경우 작업 중지 등  
작업 제한 조치

## 산업안전보건법

**제16조(관리감독자)**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.

**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**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.

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**제210조(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)** ①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,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③ 법 제132조제5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”란 특수건강진단, 수시건강진단,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, 작업전환, 근로시간 단축,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,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